



〈현행제도 개요〉

- 현재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장애급여를 지급

다만,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치료)과 함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도 병행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진폐로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제도의 문제점〉

-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 진폐 합병증의 경우,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진폐 단체는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재가 진폐재해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 및 전문가들은 진폐재해자의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여옴

〈제도개선안 마련 경위〉

노동부는 '07. 11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08. 10월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 합병증을 선호하는 불합리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제도개선을 통해 합병증에 따른 휴업급여를 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고, 진폐재해자 사망 후 자손에게 보상하는 대신 생애기간 중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노사정 공동 직업성 암 연구센터 발족

캐나다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WSIB)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의 예방을 위한 노사정 공동 직업성 암 연구센터를 캐나다 최초로 발족하였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발암물질의 노출을 인식하고,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완전 제거를 목표로 각종 지식공유와 연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Ontario Cancer Plan 2008-2011

캐나다 Ontario 암관리 공단(Cancer Care Ontario)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환자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Ontario Cancer Plan 2008-2011(3개년 암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일반적인 암 발생과 함께, 라돈 및 석면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Ontario 암관리 센터에서는 지역정부, 관계기관 및 사업주 등과 함께 Ontario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전략을 수립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성 암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직업성 암 연구센터를 개설하고, 직업성 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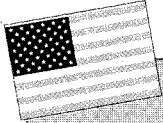
직업성 암 연구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 및 작업 절차의 발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센터에서는 연구결과를 각 기관과 공유하여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업성 암 연구센터에는 온타리오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WSIB), 캐나다 암학회(Canadian Cancer Society) 및 온타리오 암관리 공단(Cancer Care Ontario)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직업성 암 예방 및 사후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직업성 암 연구센터는 온타리오 암관리 공단 내에 위치하게 되며, 일반적인 암에 대한 연구는 물론, 발병률이 낮은 암과 희귀한 암에 대한 연구 등도 병행 실시 예정이다.

* WSIB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출처) http://www.cancer.ca/Ontario.aspx?sc_lang=en

국제산업보건동향



미국

(2009년 3월자 APHA 발표자료)

미국공공보건협회(APHA), 2009년 4월 첫째 주 전국 공공보건주간 실시

미국공공보건협회(APHA)에서는 매년 4월 첫째 주를 전국 공공보건주간으로 정하고, 공공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건강한 미국의 토대 형성(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Healthy America)”을 주제로 공공보건 증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국 공공보건주간(National Public Health Week)

미국공공보건협회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4월 첫째 주를 전국 공공보건주간으로 지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APHA에서 주관하고 정부기관, 각종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와 지원으로 시행되는 공공보건 주간에는 공공보건과 관련한 일정 주제를 정하여 각종 캠페인,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한다. 공공보건주간은 공공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보건에 대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시민·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공공보건 교육 등의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2009년 전국 공공보건주간 주제는 “건강한 미국의 토대 형성(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Healthy America)”을 설정하였으며, 현재 미국 인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세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한다. 2009년 공공보건주간에서는 각종 교육자료 제공(영어 및 스페인어), 참여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전국 공공보건주간 홍보 및 안내 실시, 전국 공공보건주간 관련 안내자료 배포, 요일별로 세부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세미나 및 행사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 및 공공보건 우수사례(스토리) 공모를 통해 일반인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APHA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출처〉 <http://www.nphw.org/nphw09/default.htm>



영국

<2009년 2월 12일자 HSE 발표자료>

Dame Carol Black 보고서를 통해 영국 근로가능인구의 건강증진 전략 발표

영국 건강, 근로 및 웰빙 범정부 프로그램(Cross-government Health, Work and Well-being Programme)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동가능인구의 건강에 대한 현재 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 및 권고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Dame Carol Black 보고서를 토대로 영국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근로연금부 근로건강국장(Dame Carol Black) 보고서는 질병의 예방과 함께 건강 및 웰빙 증진,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 시행, 비 근로자의 건강 개선, 잠재적인 근로가능 인구에 대한 건강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저자는 Dame Carol Black이며, 영국의 노동가능 연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기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구성된 건강상태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동가능 연령인구는 현업 종사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가능 인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Dame Carol Black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위협요인(Key Challenges)

노동가능 연령인구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작업능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영국보 건서비스(NHS)의 1년 예산에 육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에 대해 사업주에 의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및 조언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가능 연령인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질병이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 자문과 조언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직업 훈련을 통해 근로자가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병의 초기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장에만 대부분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지원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보건관리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근로가능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산업보건동향



영국

Dame Carol Black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정부, 건강관리 분야 전문가,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영국 내 작업장의 건강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건강 및 웰빙에 대해 사업주가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긍정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주 및 대표자 단체 등과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각 산업분야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맞춤형 자문 및 산업보건지원을 제공하는 건강 및 웰빙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영국 내 근로가능인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부서의 관련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현재의 범정부적(Cross Governmental)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 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출처〉 <http://www.workingforhealth.gov.uk/>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